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장지배적사업자 등이 작성한 약관의 인증제도 도입 등〉
■ 이언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43호)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 사용 시 신고의무 부과	2
2. 시장지배적사업자 등이 작성한 약관의 사전 인증제도 도입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언주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9. 11.
3. 회 부 일 : 2024.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하지만 표준약관 사용이 권장사항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는 계약 시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경우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 사용 시 신고의무 부과

□ 개정안은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7항 및 제34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표준약관) ① ~ ⑥ (생략) <u><신설></u>	제19조의3(표준약관)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주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u>
<u>⑦ ~ ⑨</u> (생략)	<u>⑧ ~ ⑩</u> (현행 제7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4조(과태료) ① ----- ----- -----.

<u><신 설></u> 1. · 2. (생략) ② ~ ⑤ (생략)	1. 제19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고객의 입장을 반영하여 공정하게 정하여 놓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으로서, 현행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¹⁾할 수 있음.

- 1) 제19조의3(표준약관)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단체등”이라 한다)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3. 법률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3항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심사하거나 제정·개정한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 현행법은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권장을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해 ①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의 표시의무, ②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 사용 금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③표준약관의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불리한 약관의 내용을 무효로 하도록 하고 있음²⁾.

□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 사용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조항이 통용되는 등 표준약관 제도의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에서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있으나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내용까지 소비자가 알기 힘든 현실임.

2) 제19조의3(표준약관)

- ⑥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
- ⑧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제8항을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

- 이에 개정안은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의무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표준약관 사용에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개정안과 같이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의 사용에 신고의무를 부과할 경우 표준약관 외 사용의 신고 접수를 통하여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이와 같은 의무 부과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거래분야를 대상으로 하는바, 동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큰 것으로 보임.
- 현행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제정·개정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는 경우는 ①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 상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

③법률의 제정·개정·폐지 등으로 약관을 정비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약관의 공정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과 다르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불공정약관인 것은 아닌데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민사상 계약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고, 계약조건 획일화 등 경쟁 저하 우려도 존재하므로 사전 신고의무 부과보다는 사후심사를 통하여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 중 불공정한 부분만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2. 시장지배적사업자 등이 작성한 약관의 사전 인증제도 도입

-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 및 그 밖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작성한 약관 및 약관의 변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증을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19조의4(약관의 인증) 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작성한 약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u>1.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u> <u>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거래규모, 대리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속히 인증</u>

	<u>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인증제도 실시</u> <u>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u> <u>한다.</u>
--	--

□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써,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경우 경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우월적 지위에서 약관을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일반 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보다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개정안은 시장지배적사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자가 작성한 약관 및 해당 약관의 변경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증을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작성한 불공정한 약관의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거래 상대방 및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임.

□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는 개별사건 조사 시 사후적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자가 표준약관의 사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 판단 기준³⁾으로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를 두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될 뿐이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판단에 있어서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 6788-5115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